

환경부예규 제 234 호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개정

폐기물부담금사무처리규정(환경부예규 제116호 1994년 12월 29일)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3년 11월 5일
환경부 장관

폐기물부담금사무처리규정
폐기물부담금사무처리규정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정 1994년 12월 29일 환경부예규 제116호
전문개정 2003년 11월 5일 환경부예규 제23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회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 징수 및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납부의무자”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말한다.
2. “납부장소”라 함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

하는 장소로서 국고금수납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체납액”이라 함은 체납된 부담금과 가산금을 말한다.
4. “체납자”라 함은 납부의무자로서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5. “반환금”이라 함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업자가 납부한 부담금액중 수입하지 아니한 제품 또는 재수출한 제품에 대한 부담금 납부액을 말한다.
6. “과오납금”이라 함은 납부의무가 없는 부담금 납부액, 납부의무를 초과한 부담금 납부액을 말한다.

7. “반환청구자”라 함은 납부한 부담금을 반환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징수의 순위) 부담금과 가산금, 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1. 체납처분비
2. 가산금
3. 부담금

제2장 징수 및 특촉

제4조(부담금 부과원부 비치) 한국자원재생공사사장은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신고한 전년도 제품출고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의 부담금 원부에 기록하여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최저부과액 및 단수계산) ①산정한 부담금액이 3,000원 미만일 때에는 징수결정하지 아니한다.

②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부과시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6조(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 및 납부기한) ①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에 대한 부담금의 납부고지서는 당해연도 4월 30일까지 도달될 수 있도록 발부하고 납부기한은 당해연도 5월 20일까지로 한다.

②분할납부시 납부고지는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분기 납부기한 20일전까지 납부고지서가 도달될 수 있도록 발부하여야 한다.

③수입업자가 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고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부담금 납부대상 확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한국자원재생공사사장은 즉시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부담금 납부대상일 경우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20일로 한다.

제7조(납부고지서의 변경통지 및 재발급) ①한국자원재생공사사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납부고지를 한 후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사항중 납부금액 등에 하지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납부고지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②한국자원재생공사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서를 변경고지한 때에는 이미 발행한 납부고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납부의무자가 납부고지서의 훼손·분실 등으로 납부고지서의 재발급을신청하는 때에는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제8조(제품의 출고실적 등 조사 후 납부되지 아니한 부담금) ①법 제36조 제1항 및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의 출고실적 등을 조사한 결과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된 부담금의 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의 금액과 다르다고 확인된 때에는 당해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미납된 부담금 또는 차액에 대해 납부고지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20일로 한다.

제9조(독촉) 한국자원재생공사사장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때 납부기한은 고지를 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상으로 한다.

제10조(납부기한전 징수) 한국자원재생공사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부기한 전이라도 납부의무가 확정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강제집행을 받을 때
3. 파산의 선고를 받을 때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5. 경매가 개시된 때
6. 법인이 해산한 때
7. 부담금을 포탈하고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

제11조(공매에 의한 징수) ①한국자원재생공사사장은 공매에 의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가산금, 부담금을 지체 없이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불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비는 체납처분을

행한 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제12조(징수유예) ①한국자원재생공사사장은 납부 의무자가 부담금 납부기한 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담금의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체납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부의무자가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유예사유가 있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내로 하고, 그 기간중의 분납기한 및 금액은 한국자원재생공사사장이 정한다.

③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의 징수유예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납부기한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신청은 독촉기한 내에 하여야 한다.

④한국자원재생공사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징수유예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①한국자원재생공사사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한국자원재생공사사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부보증보험증권
5. 한국자원재생공사사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부보증서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나 증기

③제2항 규정에 의한 담보가액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국채 또는 지방채는 시가에 의한다.
2. 유가증권의 평가는 국제기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납부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금액에 의한다.
4. 납부보증서는 보증액에 의한다.
5.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증기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 또는 감정기관이나 그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전문적 기술을 보유하는 자의 평가액에 의한다.

제14조(징수유예의 취소 및 통지) ①한국자원재생공사사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부담금 또는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부담금 또는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한국자원재생공사사장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3. 재산상황, 기타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제10조 각호의 사유로 인해 징수유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

②한국자원재생공사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취소한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로 통지하고 징수유예를 취소한 금액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거나, 제4장의 규정 등에 따른 필요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징수유예한 부담금의 부과일자, 부과금액, 납부기한, 징수유예기간
2. 취소 년월일
3. 취소의 이유

③징수유예의 취소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와 부과철회)

①한국자원재생공사사장은 납부의무자의 주소, 영업소재지의 불명으로 인하여 부담금납부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30일의 기간 내에서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②한국자원재생공사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부과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③한국자원재생공사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결정을 철회한 후 납부의무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부과·징수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6조(이의신청 등) ①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의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한국자원재생공사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납부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부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7조(납부의무의 승계)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인한 부담금 납부의무 승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부담금 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①부담금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납부의무자의 과·오납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3장 반 환

제19조(반환금 및 과·오납금 지급) ①한국자원재생공사사장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반환청구 또는 과·오납금에 대한 반환청구에 대해 반환결정을 한 때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반환지급결정서를 반환청구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한국자원재생공사사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 반환결정을 한 때에는 반환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폐기물부담금반환청구서에 명시된 지급은행 및 계좌번호로 반환금 등이 입금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부담금의 반환금 및 과·오납금 처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6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반환실적 등 기록·보존) 부담금반환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체납처분

제21조(재산파악 및 추적조사) ①한국자원재생공사사장은 체납자의 행방 및 재산유무를 다음 사항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현주소, 본적지 또는 재산소재지의 관할 기관과 관할세무서에 서면조사 의뢰
2. 체납 전·후에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고의로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허위의 계약을 하였거나 기타 재산을 은닉한 사실의 유무조사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면조사 의뢰에 대해 의뢰기관으로부터 회보가 없거나, 주소 및 재산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적조사하여야 한다.

1. 주소지 및 본적지 관할 행정기관의 관계 공부열람과 재산 확인·조사
2. 점포 등 임차보증금 유무 및 거래처에 대한 미수채권과 거래보증금에 대한 조사
3. 세무서에 최종 제출된 재무제표 또는 비치된 장부에 의한 동산, 부동산, 무체재산권, 채권 등 조사
4. 주민등록지에 거주여부 확인·조사
5. 기타 체납자의 소재 및 재산파악에 참고가 되는 사항

제22조(압류) 채권의 확보는 부담금의 납부독촉기간 경과후 1개월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 국제징수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금지재산 및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압류금지재산 여부를 판단하여 조치
2. 압류재산의 환가추산금액이 부담금, 가산금, 체납

처분비 등 제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범위의 재산을 압류

3. 환가가 용이한 재산을 압류

제23조(재산압류절차) ①동산, 유가증권의 압류는 다음의 절차에 의한다.

1. 동산, 유가증권의 점유를 선행한다.
2. 자동차를 압류한 때에는 자동차등록기관에 압류등록을 촉탁하고 체납자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강제점유 한다.
3. 압류한 유가증권을 관리하고, 그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②채권의 압류는 다음의 절차에 의한다.

1. 채권을 압류할 경우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고,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2.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발생하고, 급료 등에 대한 채권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친다.
3. 금융기관의 예금에 대한 압류는 예금통장의 번호와 거래은행을 확인하고 압류한다.

③부동산, 무체재산권의 압류는 다음 절차에 의한다.

1. 사전열람을 하고 열람조서를 작성한다.
2. 압류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한다.
3. 미등기 재산에 대하여는 대위등기 조치한다.
4. 등기, 등기압류 이후 체납자 또는 제3채권자에게 통지한다.
5. 미등기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토지대장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을 갖추어 보존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④자동차의 압류는 다음의 절차에 의한다.

1. 압류의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함과 동시에 인도요구를 하여야 한다.
2. 인도요구 이후 차량의 인도조치가 없을 때에는 즉시 강제점유 조치한다.
3. 현품을 점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하여 압류조서에 처리사항을 명기한다.

제24조(압류동산 및 자동차의 보관관리) ①압류한 동산을 체납자에게 보관하도록 하였을 경우에는 체납

액징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그 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한국자원재생공사사장은 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압류재산 보전의 적부를 조사하여 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한국자원재생공사사장의 인도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자동차의 압류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25조(공매처리 절차) 압류재산의 매각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3장 제10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 ①한국자원재생공사사장은 체납자에게 제10조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관서, 공공단체,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한국자원재생공사사장은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때에는 제1항의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27조(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체납처분의 처리)

①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즉시 부담금에 대한 채권을 관할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때부터 정리종료일까지 또는 그 결정한 날로부터 1년간 체납처분을 중지한다.

제28조(행정심판중인 체납처분의 처리)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청구계류중인 체납처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되, 압류재산의 처분(매각)은 당해사건의 최종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지한다.

1. 모든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 완료
2. 공매예정가격의 감정을 조속 완료
3. 청구사건 진행사항의 수시 점검·확인
4. 청구사건이 확정될 경우 즉시 공매처분

제29조(행정소송계류중인 체납처분의 처리) ①폐기물부담금 부과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으로

부터 강제집행정지명령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납처분의 집행 및 공매처분을 계속한다.

②강제집행정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유무 및 소재지 확인조사 등을 하고 소송종료 즉시 체납처분하여 채권의 일실을 방지한다.

제5장 결손처분

제30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한국자원재생공사사장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상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한국자원재생공사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의 게시판이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1. 체납자의 성명, 주소
2. 체납액
3. 체납처분의 중지 사유
4. 기타 필요한 사항

④제3항의 공고는 체납처분의 중지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한국자원재생공사사장은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31조(결손처분) ①한국자원재생공사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상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부담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때
4.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추산 가액이 체납처분비(동 목적물의 압류전에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금액 포함)에 부족 되어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재산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2조(문서의 우선취급과 처리) 다음 문서는 일반 문서에 우선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 경매기일 및 배당기일 통지서
2. 국가채권, 채무에 관련된 채권압류부명령 및 채권가압류·가처분 등 통지서
3. 교부청구, 회사정리에 관계되는 문서
4. 기타 체납처분에 관계되는 문서

제33조(부담금 등 부과상황 보고) 한국자원재생공사사장은 부담금의 반기별 부과·징수 및 반환실적 등을 매반기 익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준용규정) ①부담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세징수법 제2장 및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부담금의 징수·체납처분 및 공매에 관계되는 서식은 국세징수법시행규칙의 서식을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1월 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환경부예규 제116호(1994년 12월 29일)는 이를 폐지한다.